

한국체육정책학회지, 2020. 8, 제18권, 제3호, pp. 143~159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port Policy,
2020. 8, Vol. 18, No. 3, pp. 143~159

스포츠 성폭력의 종합적 고찰을 통한 정책 제안: 인지와 환경을 중심으로

김미숙(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책임연구위원) · 전상완(가천대학교 연구원) ·
이제현*(국민대학교 연구원)

I. 서론

2014년 대한민국 정부는 스포츠 분야 '4대 악(惡)'에 대하여 궤멸적 타격을 공언했고, 지난해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의 '스포츠 미투'가 발생했을 때는 강력한 실태조사와 대책마련, 인권 교육을 강조하면서 성폭력 진상조사 및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 왔다(BBC, 2019).

그러나 대부분 스포츠 성범죄 관련 사건이 발생한 시기에는 엄청난 논쟁거리가 되다가도, 어느 순간 현장에서 이뤄지는 정책 방안들은 용두사미에 그치고 말았다. 이처럼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자 일부에서는 겉으로만 요란한 정부의 '뒷북 대책'에 대한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실효성 있는 문제의 접근과 해결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거론되는 문제들은 책임 회피에 따른 미온적 태도, 왜곡된 온정주의, 규정을 다반사로 위반하는 체육계 그리고 고질적인 인

권유린 및 악습 등에 따른 것으로 밝혀지면서 지난 정책에 대한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주게 되었다(송용준, 2020). 무엇보다도 이 같은 성범죄에 관한 문제발생의 원인은 지금까지 여러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요인 외, 가해자가 자신이 잘못을 인지했다라도 그 죄책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같은 잘못을 수차례 반복하며 문제를 더욱 키워오고 있다는 점이다.

스포츠 현장의 성범죄는 가해자인 코치나 감독 등이 서로 '합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범죄 사실을 미화하고 있다(이성기, 2019). 이에 최근 스포츠 지도자가 선수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고자 일명 '조재범방지법'이 발의되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0). 하지만 성범죄에 있어서 범죄의 판단여부를 가름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은 '성인지 감수성'이며, 용어 자체에서 느껴지는 감성적 의미 때문인지 피해자에게 다소 불리한 편파 판결을 유도한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이성기, 2019).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을 인

핵심어: 스포츠 성폭력, 윤리성, 성인지감수성, 환경
* e-mail: kallum060@naver.com

지적인 요인으로 구분한다면 더욱이 '성인지 감수성'은 일반 사회 뿐 만 아니라 스포츠계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그 중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김양례, 2019).

한편, 최근 성범죄는 범죄자들의 공간적 감각의 상실로 인해 날이 갈수록 범죄 장소에 대한 대범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김정혜, 2020). 이러한 범죄의 대범함은 스포츠가 가진 특성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어린 나이부터 집을 떠나 특정 공간에서 긴 시간을 보내는 선수들의 경우 성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스포츠의 특성상 훈련장소 및 합숙소 등의 폐쇄성, 집단 의식 등이 피해자의 더 큰 무력함을 만들고, 이는 공간적 제약에서 오는 한계점을 의미한다(정도희, 2019).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지목한 범죄 장소가 훈련장과 경기장이 가장 많았으며, 주로 선수들만이 활동하는 공간에서 발생된다는 것이다(대한체육회, 2018). 이와 같은 조사가 반증하듯이, 더 이상 선수들의 생활·훈련공간은 성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더욱 절실하다.

스포츠계 성폭력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여론은 가해자와 이를 관리하지 못한 종목단체와 대한체육회 그리고 관련 정부 부처에 강력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와 언론 및 대중들은 어느 때 보다 스포츠계가 변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스포츠계 성범죄 근절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지속되고 있다.

2000년을 기점으로 스포츠 성폭력 관련 연구물들이 발표되기 시작하였는데 정부 기관에서는 실태조사 및 근절 대책 발표(문화체육관광부, 2007, 2012, 2013, 2019; 국가인권위원회,

2006, 2008, 2010), 방송사 보도에 따른 인권 보고서 및 비디오(정재용, 2008), 그리고 학계에서는 학교운동부, 프로스포츠팀, 직장운동부 등 체육계 성폭력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하였다(고재욱 외, 2013; 김석기, 2017; 김성하, 2015; 김현수, 2016; 윤상민, 2011; 이성기, 2019; 주종미, 2008; 허현미 외, 2008, 2011). 그 동안의 선행연구들은 체육계에서 발생된 성범죄 현황 및 환경적 특성, 법적 처벌, 정책 제안 및 개선 방안 등을 주로 제시하면서 실태조사 기반의 처방책에 대한 연구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실태조사 기반의 처방책 연구 중심은 성범죄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결국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진은 스포츠 성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정책 제안의 당위성을 제시하고, 본질적인 스포츠 성폭력의 문제의 이해를 높이고자 관련 이론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과 함께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스포츠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에 관한 국내 문헌의 실태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발생 원인을 밝히고, 적용 가능한 이론 중심에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020년 3월부터 약 1개월 간 국회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학술정보, 한국학술지인용색인 사이트 등에서 스포츠 분야의 성범죄 관련한 학위논문 및 학술지, 보고서 등의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문헌분석방법 및 전문가 검증을 통해 결과의 도출과 방안을 제시하였다.

II. 스포츠 성폭력 개관

1. 스포츠 성폭력

1) 스포츠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의거 성폭력이란 약취, 유인 및 인신 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 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죄로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이 포함되어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0). 최근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성폭력은 피해자의 인생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범죄이며,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합의가 공고해지는 과정에 있다(정도희, 2019). 그리고 스포츠계에서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폭로는 스포츠계도 성폭력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환기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요구하게 되었다.

대부분 선수의 경우, 단체합숙 생활과 지도자와의 관계가 선수들의 진로에 중요한 만큼 스포츠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더욱 문제가 되고, 일반 성폭력과는 다른 형태의 범죄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스포츠계 성폭력과 일반 성폭력과의 정의의 구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올림픽위원회(2007)에 따르면, '스포츠계 성적 괴롭힘과 학대에 관한 합의서'(Consensus on Statement Sexual Harassment and Abuse in Sport)에서 스포츠계 '성적 괴롭힘과 학대'(sexual harassment and abuse)를 정의하였다. '성폭력'(sexual violence, sexual abuse) 대신, '성적 괴롭힘과 학대'(sexual harassment and abuse)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처벌될 수 있는 성폭력 범죄는 물론, 성희롱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 합의서는 성적 괴롭힘과 학대, 위험요인을 정의하며,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따라서 '성적 괴롭힘과 학대'(sexual harassment and abuse)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고의의 여부를 떠나 적법이든 불법이든, 성적인 언어, 비언어 혹은 신체적 행위를 포함하는 행위이다. 이것은 신뢰와 권력 남용에 기반을 두고, 피해자나 방관자가 원하지 않거나 강요당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즉, 언어적이든 비언어적이든 신체적이든, 피해자가 원하지 않거나 강요받는 성적인 것은 체육계 성폭력, 즉 '성적 괴롭힘과 학대'이다.

국가인권위원회(2010)의 「스포츠 분야 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에서는 스포츠 분야 성폭력이란 스포츠(체육)와 관련된 공간적, 관계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성폭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2018) 역시 2018년 6월 4일 제정된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서 성희롱을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 성폭력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2019)에서 발행한 자료에 따르면, 스포츠 성폭력은 스포츠에 참가하는 스포츠인(선수, 지도자, 학부모, 관계자 등)이 자신의 힘과 권력,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신체적 접촉, 언어적 성희롱, 강제추행, 음란성 메시지, 성적 행위 강요와 같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의 '성적자기결정권'은 개인이 사회적 분위기나 타인에 의해 강요받거나 지배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지나 관

단에 따라 자율적이고 책임 있게 자신의 성적 행동을 결정하고 선택할 권리를 말한다. 또한 윤상민(2011)은 스포츠와 관련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정도희(2019)는 스포츠 또는 운동부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부터 성추행 그리고 강간, 동성 간 성희롱, 괴롭힘, 위협이나 협박 등과 같이, 상대 선수의 동의 없이 강제로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것, 스포츠와 관련된 공간과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성폭력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기관 및 개인 연구자들 대부분 공통적으로 스포츠 성폭력 개념을 정의하는데 있어 스포츠집단 내의 공간 및 관계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권력을 기반으로 성적인 모든 행위를 강요하는 것으로 개념화 하고 있다.

2) 스포츠 성폭력의 유형

대한체육회(2016)는 '2016년 스포츠 폭력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라 스포츠 성폭력을 강간, 성추행, 성희롱으로 구분하였고, 여성가족부(2016)는 '2016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를 통해 성폭력의 유형과 피해 형태에 따라 강간, 성추행, 성희롱, 스토킹, 몰래카메라, PC 또는 핸드폰을 이용한 음란 메시지로 나누어 유형화하였다. 대한체육회가 2019년에 발표한 「스포츠 폭력 및 성폭력 예방 가이드」에서 스포츠 성폭력의 유형은 <표 1>과 같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신체적 성폭력”이다. 신체적 성폭력은 신체적 트라우마 또는 부상을 야기할 수 있는 성적인 폭행을 가하거나 개인의 존엄성 및 자존감을 악화시킬 수 있는 신체적 성 학대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대한체육회, 2019). 또

표 1. 스포츠 성폭력 분류에 따른 유형과 내용

분류	유형	내용
신체적 성폭력	- 강간	- 개인의 존엄성 및 자존감을 악화할 수 있는 성적 학대
	- 성추행	- 상대방 협박을 통한 강간 및 동의 없는 간음 - 성적인 폭행 및 가해 행위
정신적 성폭력	- 언어적 성희롱	- 성적인 말, 행동 통한 굴욕감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시각적 성희롱	- 신체적 트라우마 혹은 부상을 이야기 야한 농담, 외모 평가, 음담패설 등 - 상대 의사와 상관없이 눈으로 혐오감이나 불쾌감 주는 행위
디지털 성범죄	- 미디어 성희롱	- 디지털을 통한 성적 괴롭힘 -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불법 촬영, 저장, 유포, 협박, 전시, 판매 등의 행위
	- 잠재적 성범죄	- 유언비어 유포

<출처 : 대한체육회, 2019>

한, 신체적 성폭력은 “강간”, “성추행” 두 가지 행위로 나뉜다. 둘째, “정신적 성폭력”이다. 성적인 말과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서, 성적인 말과 행동 혹은 기타 행위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뜻한다. 정신적 성폭력에서 “언어적 성희롱”은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음란한 농담, 음담패설, 외모 평가, 상대방을 성적 대상으로 대하는 말과 행동을 그리고 “시각적 성희롱”은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눈으로 인지가 가능한 행동을 통해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셋째, “디지털 성범죄”이다. 카메라나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불법 촬영하여 저장, 유포, 협박, 전시, 판매하는 등의 사이버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의 성적 괴롭힘을 의미한다. 넷째, “2차 피해”이다. 앞서 언급한 유형에서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으로 피해자가 속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피해

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과 같이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거나 잘못된 소문을 퍼트리는 것과 같이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2. 스포츠계 성폭력 관련 실태조사 분석

2007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선수 권익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결과 직장운동부에서의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16.1%였으며, 학력이 낮거나 연령이 낮을수록 성폭력 피해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주로 언어적·시각적 성희롱이 많다고 응답했다. 성폭력은 훈련 중에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었고, 가해자는 주로 코치나 감독이라고 조사되었다. 학생운동부 내 성폭력 피해실태를 조사한 결과, 37.5%가 학생운동부 시절에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직장운동부에서의 피해 경험 빈도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은 직장운동부에서의 성폭력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직장운동부보다 불필요한 신체접촉이나 강제추행 등의 적극적 형태의 성폭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학생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운동선수들의 63.8%는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었고 심지어 강간 피해 사례도 12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가인권위원회, 2008). “언어적 성희롱(58.3%)”, “강제추행(25.4%)”, “강간(1%)”, “강제적 성관계 요구(1.5%)” 등이었다. 장소는 대부분 합숙소나 기숙사였으며, 남녀학생선수들은 이러한 성폭력에 대응하지 않은 이유로 “불만을 말하면 선수 생활에 불리할 것 같아서(33.2%)”, “수치스럽고 당황해서

(29.7%)”,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서(29.7%)” 순으로 답하였다. 대학생 학생선수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 중 『대학생 운동선수 실태조사』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 643명 중 104명이 성폭력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은 “성적 농담이나 놀림(81%)”, “술자리에서 술을 따르라는 강요(7.2%)”, “내 몸을 불쾌하게 쳐다보는 시선(3.3%)”, “원치 않는 신체접촉(3.3%)”, “훈련을 핑계로 하는 불필요한 신체접촉(2.5%)”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해자는 주로 코치나 선배였는데, 대부분의 피해 여자선수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37.5%)”,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으니(31.3%)”, “장난이라고 생각해서(28.1%)”, “민망하거나 부끄러워서(25.0%)”, 그리고 남학생들은 “장난이라고 생각해서(47.1%)”, “불이익을 받게 될까 봐(27.5%)”,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으니(23.5%)”로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답했다(국가인권위원회, 2010). 결과적으로 중·고등학생선수들과 대학생 피해 여자선수들은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를 답한 비중이 높았고 피해를 밝히면 선수 생활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2차 피해를 받는 상황을 두려워한 것을 알 수 있었다.

2010년 대한체육회·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의 『선수폭력실태 조사 및 근절대책』 보고서에 의하면, 2,150명(운동선수 1,830명, 지도자 210명, 학부모 110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때 선수 10명 중 3명이 성폭력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자 운동선수 중 성폭력을 경험한 응답자는 26.6%로 밝혀졌다. 특히 초등학교 26.6%, 중·고등학생 28.0%, 대학 선수 이상 23%가 성폭력 경험이 있는 운동선수들이다. 여자 운동선수들 성폭력 유형 조사에

의하면 통계수치가 성적모욕감을 주는 폭언 11.9%, 신체 부위 주시 9.0%, 소극적 신체접촉 7.9%, 적극적 신체접촉(키스, 껴안기) 7.3%에 이른다. 성폭력 가해자는 트레이너 62.9%, 상급생 31.1%, 팀 동급생 10.6%로 나타났다.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는 『스포츠폭력 관행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를 위해 전국 초·중·고교 및 대학교, 일반부 운동선수 12만4천명 중 698명을 대상으로 표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의 11.5%는 성폭력을 당했다고 답했으며, 성폭력의 주된 가해자는 지도자(53.2%)와 선배(43.5%)였다. 이 중 1.7%는 성추행 및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프로스포츠협회는 『프로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5대(축구·야구·농구·배구·골프) 프로스포츠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여성 응답자의 37.3%, 남성 응답자의 5.8%가 입단 이후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피해의 비율은 차이가 있다. 여성 응답자의 33%가 언어적, 시각적, 기타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남성 응답자는 남성 응답자의 5.1%가 이러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 2019). 그러나 체육계 성폭력의 문제는 그 피해 비율은 차이가 있지만, 남녀선수 모두에게 발생하는 문제이다(장운창, 이금희, 2017).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초중고 학생선수 인권실태 및 스포츠(성)폭력 조사』를 발표하였다.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소속 102개 대학, 7,031명이었고, 응답률은 71%로 남자선수 4,050명, 여자선수 675명이 참여했다. 그 결과 대학

교 운동선수의 성폭력 피해 경험자는 9.6%(473명)으로, 초·중·고 선수의 피해실태(초 2.4%, 중 5%, 고 4%) 보다도 훨씬 높게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는 주로 '특정 신체 부위의 크거나 몸매 등 성적 농담을 하는 행위(4%, 203명; 남 3%, 여 9.2%)', '운동 중 불쾌할 정도의 불필요한 신체접촉 행위(2.5%, 123명; 남 2.2%, 여 3.3%)' 순으로 나타나 여학생이 언어적인 성희롱의 위험이 더 큰 것으로 집계되었다. 반면 남자선수의 경우는 '누군가 자신의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지게 하거나 마사지, 주무르기 등을 시키는 행위(4.3%, 176명)'와 같은 신체적 성폭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자선수들이 경험한 언어적 성희롱의 가해자는 주로 남자 선배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자 선배가 뒤를 이어 위계적 문화의 폐해를 고스란히 반영했으며, 남자선수들이 경험한 신체적 성희롱은 남자 선배, 남자코치, 남자 감독 순으로 나타나 동성 간 성희롱도 빈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자선수들은 언어적 성희롱을 당하는 장소로 훈련장을 꼽았는데 이는 훈련장이라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성적 대상화되는 피해를 보아 그 심각성이 더하다고 할 수 있다. 남학생의 경우 신체적 성희롱을 주로 숙소에서 경험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동성의 선배와 함께 거주하는 구조에서 위계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가슴이나 엉덩이, 성기 등을 강제로 만짐(1.2%)', '신체 부위를 몰래 혹은 강제로 촬영함(0.7%)'과 같은 피해의 정도가 심각한 강제추행이나 불법 촬영에 해당하는 성폭력도 조사되었으며, 성폭행에 해당하는 '강제로 성행위(강간)'를 당한 경우도 2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스포츠 성범죄 조사현황에 대한 요약은 아래 <표 2>와 같다.

3. 스포츠계 성폭력 발생원인 분석 결과

상술한 내용은 발표된 대표적인 스포츠계 성폭력 실태조사라 할 수 있다. 지도자와 선수, 선배와 후배 등 경직된 위계관계, 잦은 신체적 접촉, 합숙훈련이라는 특수한 환경 등으로 대

부분 성폭력 주요 발생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인지”와 “환경”으로 다양한 성폭력 발생 요인을 각각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자 한다.

1) 성인지 감수성 부재

성인지 감수성 부재와 둘러싼 환경적 요소들이 존재한다. 즉, 강압적 위계관계, 남성의 우월주의, 잦은 신체접촉 등이다.

표 2. 국내 스포츠 성폭력 조사현황

연도	조사 기관	조사 대상	조사 결과 요약	
2007	문화체육관광부	프로스포츠팀 및 직장운동부 16개 종목 여성 선수	피해 경험율	16.1%(학창시절 37.5%)
			피해 유형	언어적, 시각적 성희롱
			가해자	코치, 감독
			특이사항	연령이 낮을수록 피해율이 높음 훈련 중 가장 빈번히 발생
2008	국가인권위원회	중고등 학생운동선수	피해 경험율	63.8%
			피해 유형	소수 성폭력(강간), 언어적 성희롱, 강제 추행
			가해자	코치, 감독
			특이사항	불이익의 두려움으로 인한 신고의 어려움
2010	대한체육회	대학 학생운동선수	피해 경험율	25%
			피해 유형	성적 농담, 술자리 강요, 시각적 성희롱
			가해자	코치, 선배
			특이사항	2차 피해의 두려움으로 인한 신고의 어려움
2010	대한체육회	초·중·고등학교 운동선수, 운동부 지도자, 학부모	피해 경험율	30%
			피해 유형	언어적, 시각적 성희롱 및 신체접촉 성추행
			가해자	지도자, 선배
			특이사항	연령이 낮을수록 피해율이 높음
2012	문화체육관광부	일반운동부	피해 경험율	11.5%
			피해 유형	성추행, 성폭행
			가해자	지도자, 선배
			특이사항	여성의 피해 비율이 높게 나타남
2019	스포츠인권센터	5대 프로스포츠 프로선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피해 경험율	여성 37.3%, 남성 5.8%
			피해 유형	언어적, 시각적 성희롱
			가해자	코치, 감독
			특이사항	남녀 성별 간의 높은 피해 비율 차이 발생 성폭력 문제는 남녀 모두의 문제
2019	스포츠인권센터	대학스포츠협의회 회원대학 학생운동선수	피해 경험율	9.6%
			피해 유형	여성선수(언어적 성희롱) 남성선수(신체적 성희롱)
			가해자	지도자, 선배
			특이사항	성폭력 장소는 주로 훈련장소 및 대기 장소

스포츠 현장에서 위계질서는 종목을 막론하고 존재한다. 지도자와 선수, 선배와 후배 사이에 권력 관계 등이다. 특히, 선수에 대한 경기출전권 및 훈련에 관한 방식 등 권한을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고, 선후배 관계 역시 절대적 복종이 공공연한 관행으로 여겨져 왔다. 이때 지도자 혹은 상급생은 자신에게 생긴 권한을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문제이다.

남성이 육체적·사회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여성의 신체와 정신을 짓밟는 경우이다. 대부분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들은 성적 욕망이나 권력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여성 성범죄 피해자가 남성보다 월등히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스포츠 현장에서 신체접촉이 잦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승리를 축하하는 '세리모니' 등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 자연스러운 접촉이 일어나기도 하고, 훈련할 때 지도를 위한 신체의 접촉, 비의도적인 신체접촉 등이 있다는 것이다.

이때, 스포츠 성폭력 가해자는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아무렇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거나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의 기분과 감정과는 상관없이 상대방을 자신보다 힘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행동한다는 것이다. 결국, 성에 있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 성범죄가 발생하며 이는 곧 성인지 감수성 부재로 귀결된다.

2) 훈련을 위한 공간적 특수 환경

2003년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사건을 계기로 학생선수의 합숙 훈련이 감소 추

세이다. 하지만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합숙소에서의 성폭력 발생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추행 발생 장소는 단연 합숙소나 전지훈련 장소가 많았고, 사건 경험 후 남자와의 신체접촉 거부, 우울증, 사람 관계 손상 등을 나타냈다는 연구 결과(주종미, 2008)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같이 합숙 중심의 훈련방식이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단면을 제시하고 있다. 합숙소의 특성상 선수들이 폐쇄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되어 있어 선수에 대한 지도자의 권한이 더욱 극대화될 수 있어서 지도자의 권력이 더욱 남용되고, 이로 인해 선수들은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III. 스포츠 성폭력 원인에 대한 이론적 접근

앞서 스포츠계에서 성범죄의 발생 원인을 '성인지 감수성 부재'와 '훈련을 위한 공간적 특수 환경'이 스포츠 성범죄에 가장 큰 문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장에서는 두 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이론적 근거들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1. 성범죄자의 윤리성과 성인지 감수성

성범죄는 정서나 태도 이외에 개인의 윤리성이 하나의 문제일 수 있다. 오해경(2003)은 최근 사회적으로 성에 대한 개방화, 도구화의 변화 속에 자칫 그릇된 성 인식이 성범죄로 이

어지고, 결국 개인의 올바른 도덕적 판단을 위한 윤리적 가치관 정립이 필요하다고 논했다. 물론 개인이 지니고 있는 윤리성은 어떤 행동을 결정하는데 도덕과 철학의 원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박성주, 2014). 이러한 윤리적 가치관은 누구에게나 보편타당한 규범이 존재하고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도덕적 법칙이 존재한다는 의무론적 윤리(Deontological Ethics)와 동일한 행동도 시대나 문화, 환경에 따라 도덕법칙이 변할 수 있다는 상대주의적 윤리(relativist Ethics)로 나눌 수 있다(김하영, 2014). 두 윤리관의 입장은 상반된 차이를 보이지만, 어떤 윤리관이 더 높은 윤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정답은 내릴 수 없다. 스포츠윤리성의 경우 스포츠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요구되어지는 규범이나 도덕적 기준을 다룬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물론 스포츠윤리는 일반윤리의 이론적 토대와 근거를 포함하지만, 스포츠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직면하는 윤리문제 해결의 원리나 행위지침을 제시 해주는 규범체계라는 점에서 독자성을 지닌다(박성주, 2014).

최근 사회적으로 평등에 대한 가치가 중요시되고, 남성과 여성에 대한 전통적 고정관념이 파괴됨에 따라 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Hanson, Morton & Harris, 2003). 특정 사회가 가진 성에 대한 인식이나 고정관념은 성 역할을 고착화해 성에 대한 불평등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성폭력을 대하는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범죄문제의 심각성과 함께 성 평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다른 시대, 다른 조건에서 살아온 세대들이 한 조직 안에서 성에 대해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에 없다. 즉, 성인지를 발휘하는 양상은 시대와 조건에 따라 다르게 발현되고, 자신의 경험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통해 재구성되기도 한다(송인자, 강남식, 송현주, 한정원, 2006). 따라서 성인지 감수성은 한 개인이 학습하고 인지하는 단순한 지식 차원을 넘어 삶 안에서 형성된 정서적 태도나 가치들과도 연관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바라봐야 한다(안상수, 김이선, 김금미, 2009; Margaret, 2002).

이처럼 스포츠윤리성과 성인지 감수성의 결핍이 성범죄 발생 이유 중 하나의 요소로 작용 된다면, 윤리성과 성인지 감수성은 서로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물음이 생긴다. 이에 김우석(2018)은 스포츠지도자 개인의 윤리성(상대주의적 가치관, 이상주의적 가치관)이 성인지 감수성(젠더의식, 양성평등의식)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남성 스포츠지도자의 윤리적 가치관(의무론적 윤리)이 성인지 감수성(양성평등의식)에 통계적으로 부정(-)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주의 윤리적 가치관은 젠더의식과의 관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다시 설명하자면, 어떤 행위가 도덕 규칙에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즉 원리와 원칙을 자신의 우선적인 판단기준으로 삼는 의무론적 윤리 가치관(윤리성)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이유로 인해 양성평등에 대한 의식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결국, 오늘날 우리가 상대적으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판단되는 성향을 지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윤리성과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은 각

각 독립적인 요인으로 바라봐야 한다. 이는 스포츠계의 구조적으로 은폐된 젠더 문제를 인식해 내기 위한 능력으로 간주해야 하며, 별도의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능력을 증진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교육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스포츠계 성차별적 문제에 대한 양성평등의식뿐 아니라 구조적으로 감춰진 젠더 문제를 인식해 내는 젠더 의식과 관련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2. 스포츠 성폭력과 합리적 선택이론

합리적 선택이론은 위험 평가, 보상, 문제행동에 대한 도덕성(윤리성)을 포함해서 범죄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요인들을 검토한다. 이러한 관점은 범죄자가 인지된 위험 요소들과 그러한 행동으로 얻게 될 대가를 비교하여 범행을 결정한다는 점에 그 근거를 둔다(최진태, 2006). 합리적 선택이론은 범죄자의 특성 혹은 범죄 성향 대한 관심보다는 범죄행위가 어떻게 하여 발생하는지 중점을 두는 것이 범죄 발생이론 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합리적 선택이론을 통해 스포츠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왜 타 성범죄와 다른 형태를 띠고 있는지 살펴보고, 범죄자의 특성보다 상황적 주변 요인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Becker(1986)는 범죄행위를 경제학자들이 소비자선택을 분석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그의 이 같은 연구는 사회학, 인구학, 범죄학에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범죄자들은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시간을 사용할 때의 비용과 수익을 계산하고 범죄가 가장 수익성이

좋은 직업이고 취미라고 결론을 내린다(Cornish & Clarke, 2003). 범죄자가 선택한 위험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는 점에서 보았을 때 그 범죄에 대한 기대 보상이 특히 중요해진다.

범죄자가 어떤 범죄행위를 통해 갖게 되는 잠재적인 위험과 보상을 측정하는 방식은 잠재적인 범죄 목표물 주변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관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스포츠 범죄자의 경우도 해당될 수 있다. 스포츠 성범죄 대부분이 아주 은밀한 장소에서 범죄를 저지르며, 이는 범죄환경에 대해 미리 파악하고, 범죄 대상이 되는 선수들의 약점을 통해 범죄에 대한 은폐나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 스포츠 성범죄자는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오랜 기간 활동했던 곳에서 범죄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남의 눈에 띄일 가능성과 범죄에 대한 제지를 당할 확률이 극히 낮다.

그러므로 스포츠 성범죄자는 거의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내는 같은 팀의 동료들, 팀 관리자들(코치진 등), 시설 경비원과 같이 훈련 및 합숙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주도면밀하게 범죄를 계획하여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며, 그래서 앞선 성범죄 피해 발생 장소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차지하는 곳이 바로 라커룸이나 훈련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합리적인 선택의 관점은 범죄자들이 자극을 받기는 하지만 그들이 잠재적인 목표물이 너무 위험하거나 너무 큰 노력이 필요하거나 모험을 감수하여 얻어지는 수익이 너무 빈약하다고 인식을 하면 범죄행위를 단념하게 될 것이라고 가정한다(Cornish & Clarke, 2003).

물론 합리적 범죄이론을 통해, 스포츠 성범죄자들의 범죄를 옹호하려는 건 아니다. 더욱이

범죄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간 스포츠 성범죄에 근절에 대한 방안으로 제시한 내용이 주로 피해자의 심리적 치료·지원, 가해자에 대한 처벌·교화에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범죄 대상 중심이 아닌 범죄환경에 대한 우회적인 시각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합리적 범죄이론에 따른 스포츠 성범죄자의 경우, 범죄의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 범죄자가 범죄를 통한 어떤 이득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포츠 성범죄의 대다수는 지도자 혹은 선배이다. 합리적 범죄이론에서 범죄자가 얻는 이익으로 성적 만족, 즐거움, 자유, 존경, 복수, 긴장의 완화 물질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스포츠 성범죄자는 이 중 존경이 가장 큰 기재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합리적 범죄이론에 따른 범죄의 선택은 참여결정(involve)과 상황결정(event) 2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스포츠 성범죄는 상황결정에 해당된다. 이유는 범죄 중심의 결정이기 때문이다.

범죄를 준비하고 어떻게 범죄를 진행할지에 대한 결정을 말한다. 또한, 누구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며, 어디에서 범죄를 저지르지도 상황결정에 해당한다. 앞선 조사자료에 따르면 스포츠 성범죄의 대다수가 무의식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때도 있지만, 계획적으로 지속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더 많다. 범죄의 대상은 자신의 제자 혹은 후배이며, 범죄의 장소는 철저하게 계산된 은밀하고 밀폐된 곳을 선택하는 이유도 바로 위와 같은 결정이 증명한다. 따라서 스포츠 성범죄의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환경의 변화가 시급하다.

IV. 스포츠 성폭력 근절방안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체육계 폭력과 성폭력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 엄벌해야 한다”라고 공표했다(중앙일보, 2019). 그간 스포츠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문제에 대한 처벌에 힘쓰지 않았던 적은 없다. 2007년 처음 스포츠 성폭력 사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이후 정부는 성폭력 지도자의 영구 제명 등의 강경한 내용을 담은 ‘스포츠 성폭력 근절대책’까지 발표했다. 하지만 스포츠 성폭력 범죄는 꾸준히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청(2018)에서 발표한 ‘성폭력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에 관한 5년간의 통계에 따르면, 2014년 29,517건을 시작으로 2018년 35,308건으로 매년 그 수치는 줄어들지 않고 늘고 있다. 이와 같은 통계적 수치로 보듯이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만으로는 성범죄 근절방안으로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스포츠 성범죄 근절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성인지 감수성 중심의 교육개발

김인형(2010)의 연구에 의하면, 성희롱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 개념 이해 및 문제 인식 요인에서 모두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성희롱의 발생이나 현상에 대하여 잘못 인지하고 있는 오류성 통념에 있어서 행위 오해의 요인에서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과 비교하면 스포츠 상황에서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허용수준이 좀 더 높다고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봤을 때, 스포츠 현장에서 남성

지도자가 생각하는 성희롱의 개념과 피해 당사자인 여성 선수가 생각하는 성희롱의 개념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러한 인식의 차이로 성희롱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이 낮다는 것이다.

이미 대한체육회, 경기단체나 시도체육회에서는 매년 선수(성)폭력 예방 교육을 선수, 지도자, 심판, 프런트, 학부모 대상으로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이 경기 출전, 선수등록 등과 같이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단지 선택적 권고사항으로 진행되고 있다. 반면 IOC에서는 '스포츠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서(Consensus Statement Sexual Harassment & Abuse in Sport)'에서도 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교육을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결국, 스포츠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예방과 관련하여 교육이 강조되어야 하고 그만큼 중요성을 인식했다면, 이제는 교육 안에 세부적인 내용구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고찰된 내용을 토대로 살펴본다면, 성범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한 인간 개인의 윤리적인 성향과 성인지 감수성이 있지만, 이 둘이 상호 보완적 관계가 아닌 각각의 독립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스포츠윤리교육'과 더불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형태의 '성인지 감수성 중심의 스포츠 성폭력 예방 교육'이 되어야 한다.

최근 교육부(2020)는 "학생들이 올바른 성인지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 추진"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성범죄 근절을 위한 성폭력 예방 교육의 전면 개정을 공표하였다. 성인지 감수성 개념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아직 없지만 대체로 성별 간의 차이로 인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차별과 유불리함 또는 불균형

을 인지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매력적이고 섹시한' 등의 표현을 쓰는 교사의 언행이 올바른 성인지 감수성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언어적 성희롱이다. 앞선 조사 자료에서 보았듯이, 스포츠 성범죄의 경우 언어적 신체적 성희롱의 비율이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스포츠 성범죄 예방 교육의 표준 교안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성평등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차이와 차별, 평등의 기본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여성차별철폐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교육내용(지식, 이해)이어야 한다.

둘째,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양성평등 침해 상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양성평등에 대한 침해의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교육내용(가치, 태도)이어야 한다.

셋째, 스포츠계 자체가 양성평등 친화적인 행동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강령·지침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구조적으로 남성성이 강조되어 온 스포츠계가 행동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교육내용(기능, 행동)이어야 한다.

2. 범죄예방 안심 체육시설 인증제도 (CPTED) 도입

스포츠 성폭력 발생 장소로 빈번하게 합숙소, 훈련장소 등이 제기되고 있다(대한체육회, 2010). 이러한 범죄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선수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스포츠시설 혹은 훈련장소에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 스포츠 성범죄 근절 중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즉 범죄예방 환경(CPTED_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을 마련하기 위한 안심 체육시설 인증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CPTED는 범죄로부터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가해자, 피해자, 장소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죄의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일련의 물리학적 설계를 말하는 것으로(이상원, 2005). CPTED는 건물이나 도로의 관리, 조명의 증가, 취약요소에 CCTV설치, 사건장치의 개선, 출입문의 강화, 수목의 설계, 감시장치의 이용, 기타 물리적 환경의 변화는 사회적 응집력,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가져오고 궁극적으로는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게 된다.

일반적으로 범죄는 여러 환경적 요소들이 모여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주장에 의해 만들어진 '일상활동이론'은 범죄 발생의 구성요소를 동기화된 범죄자(motivated offender), 적당한 대상(suitable target), 보호의 부재(lack of guardianship)로 구분된다(Cohen & Felson, 1979). 세 가지 중 어느 한 요소라도 결핍되지 않으면 어떠한 범죄 행동도 발생하지 않고 개인의 이상 활동 유형에 따라 범죄의 기회를 증가시킬 수도 감소시킬 수도 있다고 본다(Cohen & Felson, 1979). 이 중 보호의 부재는 피해자의 적당한 목표를 쉽게 만드는 범위가 된다. 혼자 있는 사람, 부족한 감시 감독과 같은 상황에서는 동기화된 범죄자를 억제할 것이 없으므로 범죄를 저지르기 좋은 환경이다. CPTED는 범죄의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감사원(2019)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을 대상으로 '국가대표 및 선수촌 등 운영·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국가대

표 선수촌 출입관리와 건물 사각지대 관리 미흡 등과 같이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앞서 합리적 선택이론을 통해 스포츠 성범죄의 원인을 친숙하고 은밀한 장소에서 누구에게도 발각되지 않는 곳이 가해자에게 제공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결국, 성범죄자에게는 범죄에 최적화된 범죄환경이 자신의 동기화된 범죄 욕구를 참지 못하게 만드는 기저 역할을 한다고 해석된다.

경찰청(2014)은 범죄 발생 예방을 목적으로 'CPTED'라는 '범죄예방 우수 시설 인증제도가 있다. 수많은 학교·기숙사·시설·주차장 등에서 범죄 예방 환경설계에 따른 '범죄예방 우수인증'을 받고 있다. '범죄예방 우수 시설 인증제도'는 특정 공간을 경찰의 범죄예방진단 후 일정 기준 통과 시 2년간 우수 시설로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스포츠계에도 적용하여 스포츠시설 혹은 훈련장소에 '범죄예방 안심스포츠(체육)시설 인증'을 도입을 통해 스포츠 선수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지금까지 조사된 스포츠계 성범죄 분석과는 다른 시각으로 재조명하고자 스포츠 성폭력에 관한 국내 문헌의 체계적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발생 원인을 밝히고, 이를 적용 가능한 이론에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포츠 성폭력의 개념은 일반 성폭력의 정의와 구분될 수 있다. 특히 기관 및 개인 연구자들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스포츠 성폭력 개념을 정의하는데 있어 스포츠집단 내의 공

간 및 관계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권력을 기반으로 성적인 모든 행위를 강요하는 것으로 개념화 하고 있으며, 스포츠 성범죄 유형 또한 신체적 성폭력, 정신적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 등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둘째, 스포츠 성범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보다 피해 경험이 더 많으며, 이 중 가해의 대상자는 대부분 지도자와 선배로 나타났다. 특이사항으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피해율이 높았으며, 남녀 간의 높은 피해 비율 차이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성폭력의 문제는 남녀 모두의 문제로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스포츠계 성폭력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인들의 성인지 감수성의 부재와 훈련을 위한 공간적 특수 환경을 주요 원인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위 두 가지 스포츠 성범죄 발생 원인을 이론적 고찰을 통해 모색한 근절방안으로는 1) 성인지감수성 중심의 교육개발, 2) 범죄예방 안심 체육시설 인증제도 도입(CPTED)이다.

본 연구는 공식 통계자료들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으나 선행연구들이 부족한 현실에서 스포츠 성범죄의 다양한 이론적 고찰을 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 이 연구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국내·외 연구사례 등을 포함한 비공식자료나 정성적인 연구의 심도 있는 분석 등은 후속연구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감사원(2019). **국가대표 및 선수촌 운영·관리 실태 조사**. 서울: 감사원.

고재욱, 임신자(2013). 태권도지도자들의 성폭력 인식수준에 관한 분석. **한국체육과학회지**, 22(5), 109-121.

교육부(2020). **대학 성희롱 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 세종: 교육부.

국가법령정보센터(20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세종: 법제처.

국가인권위원회(2006). **학생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2008). **학생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2010). **국가인권회의 보고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2019).

초중고 학생선수 인권실태 및 스포츠 (성)폭력 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올림픽위원회(2007). **체육계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서**. 스위스: 국제올림픽위원회. https://stillmed.olympic.org/media/Document%20Library/OlympicOrg/IOC/Who-We-Are/Commissions/Medical-and-Scientific-Commission/EN-IOC-Consensus-Statement-Sexual-Harassment-and-Abuse-in-Sport.pdf#_ga=2.247272068.1076736112.1595817495-594969114.1595817495.

경찰청(2014). **CPTED 방법인증제 추진결과**. 서울: 경찰청.

경찰청(2018). **범죄발생 및 검거 현황**. 서울: 경찰청.

김석기(2017). 스포츠 (성)폭력 근절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안. **한국체육정책학회지**, 15(1), 37-49.

김성하(2015). 엘리트 스포츠 내 성폭력 발생 기저와 경험체계 탐색. **한국체육학회지**, 54(6), 81-94.

김양례(2019). 여성 스포츠리더 교육이 성인지

- 김수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체육학회지**, 33(4), 1-14.
- 김우석(2018). 스포츠지도자의 윤리적가치관이 성인지감수성 및 성폭력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7(5), 55-67.
- 김인형(2010). 스포츠에서의 Sexual Harassment에 대한 인식, 실태 및 발생원인 분석을 위한 통합 방법론적 접근.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3(3), 55-79.
- 김정혜(2020). 텔레그램 'n번방' 등 온라인 매개 성폭력 사건들을 통해 본 이 시대 성폭력의 특성. **여성가족패널브리프**, 54, 1-9.
- 김현수(2016). 대한민국의 스포츠와 인권 승리를 향한 폭력의 시대. **한국체육학회지**, 55(6), 1-9.
- 김하영(2014). 세상 이야기, 건강한 이야기. *Web Korea Annual*, 14, 64-67.
- 대한체육회(2010). **2010년 성폭력 실태조사**. 서울: 대한체육회.
- 대한체육회(2016). **2016년 스포츠 폭력 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서울: 대한체육회.
- 대한체육회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2010). **선수 폭력실태 조사 및 근절대책**. 서울: 대한체육회.
- 대한체육회(2018). **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 서울: 대한체육회.
- 대한체육회·스포츠인권센터(2019). **스포츠 (성) 폭력 실태조사**. 서울: 대한체육회.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7). **여성 선수 권익 실태조사**.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2012). **스포츠 폭력 관행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2013). **학교체육진흥법 제정**.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2018). **선수인권보호 혁신계획안**.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프로스포츠협회(2019). **프로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박성주(2014). 스포츠윤리의 이론적 기초. **한국체육철학회지**, 22(3), 77-97.
- 송용준(2020년 7월 8일). 돈 필요하면 돈 뜯겼고 성적 빌미로 폭행에 시달렸다.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200708520332?OutUrl=naver>.
- 송인자, 강남식, 송현주, 한정원(2006). **성별영향평가 교육프로그램 개발**. 서울: 여성가족부.
- 안상수, 김이선, 김금미(2009). **성평등 실천 국민실태조사 및 장애요인 연구(1)**.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2016).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세종: 여성가족부.
- 오혜경(2003). 여대생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및 교육 요구도에 관한 연구.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2(2), 163-178.
- 윤상민(2011). 스포츠 성폭력의 실태, 규제와 대책. **스포츠와 법**, 14(1), 59-84.
- 이상원(2005). 경비협화부설 Security Academy 설립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 5, 1-40.
- 이성기(2019). 스포츠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서 '성인지 감수성'의 역할과 과제. **스포츠와 법**, 22(2), 105-130.
- 장윤창, 이금희(2017). 스포츠 성폭력 예방 및 대처의 인식 개선 조사. **한국체육과학회지**, 26(2), 157-174.
- 정도희(2019). 체육계 성폭력의 실태와 대응방안. **법학연구**, 27(4), 287-308.

- 정재용(2008년 02월 11일). '2008 스포츠와 성폭력에 대한 인권 보고서' **KBS NEW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1507936>.
- 주종미(2008). 운동부내 성폭력 실태와 대응방안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1(3), 219-245.
- 정은혜(2019년01월14일). 문재인 대통령 “체육계 성폭력 철저히 조사해 가해자 엄벌”.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288501>.
- 최진태(2006). **테러리즘의 이론과 실제**. 파주: 대영문화사.
- 허현미, 황정임, 선보영(2008). 여성선수 성폭력에 대한 여성지도자의 인식.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1(2), 401-421.
- 허현미(2011). 한국형 스포츠 성폭력 예방 가이드라인 개발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4(4), 143-165.
- BBC NEWS(2019년 11월 8일). 스포츠 마투 초 중 고 운동선수 220여 명 '성폭력 경험 있어' **BBC NEWS**. <https://www.bbc.com/korean/news-50843394>.
- Becker, G., (1986). *The Economic Approach to Human Behavior*.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Cohen, Lawrence E. and Marcus Felson (1979). *On estimating the social costs of national economic policy: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Brenner study*. Social Indicators Research. In press.
- Conish, D. B. & Clarke, R. V.(2003). *Opportunities, precipitators and criminal decisions: A reply to Wortley's critique of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in Crime Prevention Studies*. NY: Criminal Justice Press.
- Hanson, R. K, Morton, K. E., & Harris, A. J.(2003). *Sexual offender recidivism risk: What we know and what need to know*. New York, NY: New York Academy of Science.
- Margaret, M(2002). Developing an Understanding of Gender Sensitive Care: Exploring Concepts and Knowledg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40(1), 69-77.

논문투고일 : 2020년 7월 14일
논문심사일 : 2020년 7월 22일
게재확정일 : 2020년 8월 20일

ABSTRACT

Policy Proposal through Comprehensive Review of Sports Sexual Violence : Focusing on awareness and environment'

Kim, Mi-Suk(Korea Institute of Sports Science)•

Jeon, Sang-Wan(Gachon University)•Lee, Je-Hun(Kokmin Universit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fact-finding analysis of the domestic literature on sports sexual violence,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cause of occurrence and present policy suggestions in the center of applicable theory. The research method focused on content analysis and literature research, an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concept of sports sexual violence is somewhat different from that of general sexual violence, and the types of sex crimes involved are divided into four types: physical, mental, digital and secondary damage. Second, the main causes of sports sexual violence were the lack of proper gender sensitivity and the special environment for training. Third, it was proposed to develop education centered on gender sensitivity and to introduce a system for certifying safe sports facilities for crime prevention as measures to eradicate the main causes of sports sexual violence analyzed. In conclusion, although there is a person's ethical tendency and gender sensitivity 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in sex crimes, if the two are independent of each other, rather than complementary, it should be a "sports ethics education" that is currently underway, as well as a "systematic and independent" form of education to prevent sexual violence. In addition, efforts should be made to improve sports athletes' ability to exercise in a safe environment through the introduction of "CPTED" at sports facilities or training sites, taking as an example the introduction of "CPTED" to prevent crimes in various places in society (schools, parking lots, etc.).

Key words : Sports sexual violence, Ethics, Gender sensitivity, Environment